

##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 
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 
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,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띄어쓰기 반영(안 제8조)
  -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이내로 인상

### 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0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복지정책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4397 / Fax 031)940-4399 / 이메일 shrbgjs1@korea.kr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개정안 내용 |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|  |    |